

#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 법무부 주요 지침

### ○ 2010. 2. 7. 개정 공증관계 제법령 관련 법무부 업무지침(2010. 2. 26.)

#### ① 「공증인법」 제20조제4항 해석 관련

개정 「공증인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 「공증서식 등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식규칙」이라 함) 제4조에 따른 별도1은 인가공증인의 경우, 그 직인에 공증담당변호사의 이름을 각각 새겨 넣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규범인 「서식규칙」이 상위규범인 「공증인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 개정 「공증인법」 제20조제4항에서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공증사무는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사무소에서 직인을 비치하여 공증인 없이 공증사무를 행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개정 「공증인법」은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의5),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7조의2 제2항).

☞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해석상 「공증인법」 제20조제4항의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 인가공증인의 경우 공증담당변호사의 숫자를 불문하고 하나의 직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별로 직인을 만들어 사용하되, 각 공증담당변호사는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② 기존 공증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및 신고절차

☞ 개정 「공증인법」 제15조의3에 의하여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

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 ① 공증담당변호사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새로 지정하여 신고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법무부 법무과)에게 신고.
- ② 법무부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무부에서는 공증담당변호사의 법조경력 요건 구비여부,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공증담당변호사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인가공증인에게 통지.
- ③ 신고 수리 통지를 받은 인가공증인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증담당변호사가 사용할 직인 및 서명을 신고.

☞ 개정 「공증인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존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및 신고절차

- ※ 별도의 신고양식은 없으며, 2010. 5. 6.까지 일반적인 공문 형식으로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 ※ 신고서 제출시 공증담당변호사의 법조경력에 대한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
  - 법조 경력 입증자료의 경우 판사 경력은 법원에서, 검사 경력은 법무부에서, 변호사 경력은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하는 재직 또는 경력 관련 증명서를 첨부

※ 공증담당 변호사에 대한 결격사유 없음의 입증자료는, 법무부에서 해당 변호사에 대한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사실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므로, 조회경과에 대하여 신고인의 이의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의 입증자료 첨부 필요 없음.

☞ 2010. 2. 7. 이후 인가공증인의 주사무소 구성원으로 신규 가입한 변호사 중 공증담당변호사로 새로 추가 지정할 경우 신고절차

- ※ 위의 경우와 같이 별도 신고서 양식은 없으며, 일반 공문 형식으로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 ※ 신고서 제출시 공증담당변호사의 이력서 및 법조경력(10년 이상)에 대한 입증자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를 첨부

### ③ 공증서식 등에 관하여

(1) 제35호, 제37호, 제40호 서식 사용시 제12호 서식 사용 여부

개정된 「서식규칙」 제27조의 별지 제35호서식, 제29조의 별지 제37호서식, 제30조의 별지 제40호서식에서는 종전에 없던 공증인의 서명날인란이 포함되어 개정되었고, 「서식규칙」 제16조(서명날인 용지)에서는, “공증인이 공정증서·인증서 및 그 정본·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서식 사용의 경우 종전의 경우처럼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할 필요 없는지 여부?

☞ 개정 전에는 공증서식 중 인증문에 공증인의 서명·날인 기재란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혼재되어 있던 실정인바, 금번 서식 개정시 인증문 하단에 공증인의 서명·날인 기재란을 통일적으로 기재하였고,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제2장 '일반 서식의 사용' 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제16조 규정은 공정증서·사서증서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등은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편에 규정되어 있어, 이들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들은 사서증서에만 적용되고, 제16조와의 관계에서 특별규정으로 해석되므로,

☞ 각 서식에 서명·날인 기재란이 있는 경우(별지 제35호, 제37호, 제40호 등)에서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12호 서식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 없음.

(2) 제15호 서식 문구 오기 정정

☞ 개정된 「서식규칙」 제17조의 제4항에 따른 별지 제15호 서식 중 '민사집행법 제29조 제2항의 집행문등본'은 동 규칙 개정 과정상의 오류로서 관보 정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정할 예정인바,

☞ 동 서식 사용시 문구를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의 집행문등본'으로 정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3) '본 공증인'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서식규칙」에 의하면 종전에 '본 직'이라는 용어 대신 '본 공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본 공증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본 공증담당변호사'로 수정하여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 공증인법상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으므로, '본 공증인'이라는 표현을 공증담당변호사 개념을 포섭하고 있는바, 서식상 인가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를 예정하여 이를 '본 공증담당변호사로'로 표현하여야 한다면,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사용하는 서식을 모두 달리 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는 공증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공증인법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 또한, 공증사무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가공증인' 이고, 공증사무는 '인가공증인'의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경우도 '본 공증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함.

**(4) 영문서식의 경우 '소속'란의 각 '지방검찰청'의 영문표기법**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Seoul Nor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Seoul We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의정부지방검찰청  
Uijeongb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인천지방검찰청  
Inch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수원지방검찰청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춘천지방검찰청  
Chunch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청주지방검찰청  
Cheong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대전지방검찰청  
Daej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대구지방검찰청  
Daeg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부산지방검찰청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울산지방검찰청  
Ul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창원지방검찰청  
Chang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광주지방검찰청  
Gwang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전주지방검찰청  
Jeon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제주지방검찰청  
Je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위 소속별 지방검찰청의 영문표기는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의 영문 사이트 중 「Organization」 - 「Structure of Prosecutors' Office」에서 확인 가능

**(5) 서명날인란의 공증인 등 표기방법 통일**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 「공증인법」 제22조에 따라 그 직명, 소속, 사무소소재지를 적게 되어 있고, 「서식규칙」에서 공증인이 서명날인하는 곳에 사용된 표기방법으로,

공증사무소명칭
소속
소재지표시
공증인

와 같이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각 인가공증의 경우 공증담당변호사 표기 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임명공증인의 경우

(예) 서울중앙지검 소속, 임명공증인 김갑동

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 김갑동 사무소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
공증인	김 갑 동 (인)

☞ 인가공증인의 경우

(예) 서울중앙지검 소속, 법무법인 대한민국, 공증담당변호사 김갑동

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한민국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
공증인	김 갑 동 (인)

(6) 선서인증에 관한 영문서식

개정 「공증인법」의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선서인증의 경우. 이는 국내에서 보다도 외국기관이나 외국기업에서 선서인증의 형식을 요구하는 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도의 영문서식은 없는지?

☞ 공증인법 제26조(사용언어)에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문 병기를 통하여 작성 가능함.

☞ 추후 선서서(별지 제33호의2), 선서인증문(별지 제34호의2, 제35호의2)에 대한 영문서식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 장기 과제로 삼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규칙 개정시 반영 예정임.

(7) 위임장의 서식과 관련한 건의

1991년 이전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공증 위임장에도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으나, 「인지세법」 개정으로 더 이상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증 위임장에 해당하는 제10호서식, 제10호의2서식, 제10호의3서식 및 제10호의4서식 중 인지를 붙이는 난이 서식화되어 있는데, 서식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되는지 여부?

☞ 「인지세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인지 첩부가 불필요하므로, 인지 첩부란이 삭제된 서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향후 규칙 개정시 반영 예정임.

④ 신원보증금 추가 납부 경과조치 관련

(1) 신원보증금 추가 납부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이하 「신원보증금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에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 시행일 이후 납부기간인 3개월 이내에 공증담당변호사 일부가 구성원에서 탈퇴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공증담당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된 경우 해당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한 신원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 개정 「공증인법」 시행일부부터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신원보증금 납부기간 사이에 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구성원에서의 탈퇴 등의 사유로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증담당변호사의 증액된 신원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2) 신원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관하여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납부를 대신할 경우, 보험기간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 보증보험증권이 해당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사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효하여야 하므로,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갱신하여야 함.

※ 공증담당변호사의 보증보험기간을 언제까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임.

⑤ 공증수수료 중 반송료 관련

개정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조의 2(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에 의하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여, 등기우편에 의하여 통지 또는 송달하는 경우에 반송요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반송될 경우 반송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공증인이 촉탁인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통지 또는 송달 관련 비용은 실비 개념이므로 미리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을 예측하여 반송요금을 받을 수는 없음.

※ 반송요금 징수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그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임.



⑥ 선서인증방법에 관하여

사서증서에 관하여 소위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57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촉탁인이 원본 2통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이 경우에 사서증서 자체는 원본 2통이 작성되었으나 그것에 제3자가 작성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제3자 작성의 서면이 1부밖에 없는 경우 하나는 원본을 첨부하고 하나는 사본을 첨부하여 원본 2통을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3자 작성의 서면 원본이 첨부된 사서증서원본을 이용한 인증서는 공증인이 보관하는지 아니면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 ☞ 첨부되는 제3자 작성 서류의 원본이 1통인 경우 어음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와 같이 원본은 촉탁인에게 반환하고, 공증인은 사본을 보존하는 형태로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일용 판단됨.
- ※ 다만 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임.

① 공증인의 법인의사록 인증 업무 처리요령 시달(2010. 9. 1.)

① 개요

- ☞ 법인의사록 인증 제도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검토하게 하여 법인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

- ☞ 최근 부실한 법인의사록 인증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사회적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실하게 법인의사록을 인증한 공증인을 무겁게 징계한 사례가 있었음.
- ☞ 그 실태와 원인을 보면,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들 중에 법인의사록을 인증할 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적법한 법인의사록 인증에 장애가 있는 실정임.
- ☞ 이러한 부실 인증 사례를 방지하여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의사록 인증 시 공증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고 인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본 지침을 마련함.
- ☞ 공증인은 업무처리 시 본 요령을 준수하여, 법인의사록 부실 인증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② 관련규정

### 〈공증인법〉

####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제27조 (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결의를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 제57조 (인증방법)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결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0조 (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 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증촉탁서)**

① 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

**<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2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⑦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0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91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명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1조의3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

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촉탁인의 확인

#### (1) 촉탁인

☞ 참석인증 : 원칙적으로 법인 의사록의 작성 주체인 의장(주주총회의 경우 정관에서 정해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 이사회에 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 참석인증의 경우 촉탁인의 자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의장이 촉탁하는 것이 상당

☞ 청문인증 :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주주총회의 경우 해당 의결을 한 주주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주주, 이사회에 의 경우 해당 의결을 한 이사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이사)

※ 촉탁서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 의해 작성되며, 촉탁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음(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3항).

※ 촉탁인이 법인의사록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의사록 2통을 제출 받아야 함(공증인법 제66조의2 제4항, 제63조 제1항).

#### (2) 촉탁인의 확인

☞ 공증인이 법인의사록을 인증하기 위하

여는 촉탁인(대리인 포함)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므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4항, 제59조, 제27조 제1항), 공증인은 촉탁인(대리인 포함)을 직접 확인해야 함.

☞ 공증인이 촉탁인(대리인 포함)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여권, 운전면허증)를 제출하게 함.

☞ 대리인에 의해 법인의사록 인증이 촉탁된 경우, 공증인은 촉탁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외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함.

☞ 청문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야 하므로, 촉탁인이 제출하는 주주명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함.

☞ 공증인은 촉탁인과 보조자가 작성한 촉탁서의 촉탁인·대리인 확인란을 확인한 뒤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함.

※ 법인 의사록 인증 시 공증인은 인증서 사본에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

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함(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 특히, 허위로 작성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경영권 변동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주주총회로 인하여 경영권 변동이 있는 경우, 공증인으로서 주주명부 등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를 특히 확인하여야 함.

-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명부 등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제출된 정관 및 주주명부 등의 진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 회사 본점에 조회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④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 확인

##### (1) 참석인증

☞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서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추후 작성된 의사록에 적시된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2) 청문인증

☞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

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확인함.

☞ 또한 공증인은 촉탁인이 제출하는 진술서를 통하여 진실 부합 여부를 확인하므로, 진술서는 회의의 소집 및 결의절차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함(일반적으로 대표이사 등 회의의 의장).

#### 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확인

☞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 및 무효인 법률행위 등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이는 법인의사록 인증에 있어서도 준용됨(공증인법 제66조의2 제4항, 제59조, 제25조).

☞ 그러므로 법인의사록 인증을 하는 공증인으로서 주총, 이사회 등 해당 의결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의결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1) 소집권자의 확인

☞ 상법 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회가 소집을 결정하므로(상법 제362조),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함.

- ☞ 상법 제366조(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542조의6 참조)는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회사에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하여, 기존의 경영진이 아닌 소수 주주들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공증인으로서 ① 소수 주주들이 법 제366조 제1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따라 서면을 통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② 이사회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는지 여부(법원의 허가서 등으로 확인) 등을 반드시 확인함.

※ 공증인징계위원회는 촉탁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이사 전원을 교체하는 취지의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하면서, ①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② 소수 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소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③ 의사록 전반부에 기재된 의장 성명과 의사록 말미의 서명날인 부분의 성명이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한 공증담당번호사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한 사례가 있음.

(2) 소집 통지 등 절차 확인

- ☞ 상법 제363조(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542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상법 제363조 제1항(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542조의4 제1항 참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였는지 등]를 촉탁인의 진술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함.

(3) 의결 내용의 확인

- ☞ 상법 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상법 제361조).

- ☞ 상법 및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여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 내용이 상법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인지 여부를 살펴야 함. 정관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결의 내용이 없는지 여부도 살펴야 함.

(4) 정족수의 확인

- ☞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상법 제368조 제1항).

☞ 상법 및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여, 해당 결의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정족수로는 주식분할(상법 제32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2), 영업양도, 양수(제374조), 이사의 해임(제385조), 정관변경(제434조), 자본감소(제438조), 해산(제518조), 회사의 합병(제522조) 등이 있음.

(5) 기타 확인 사항

☞ 의사록의 기재 사항 및 촉탁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총회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상법 제368조 제3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여부(제4항) 등을 확인함.

※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함.

⑥ 서명날인 및 의사록의 보관

☞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공증인은 등부번호,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후 의사록과 인증부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함(공증인법 제66조의2 제4항, 제58조).

☞ 또한 의사록에 법 제64조가 각 호가 규

정하고 있는 부속서류 및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첨부서류를 철하여 보존하여야 함.

## 공증 법령 개정안 의견 제시

### ● 인감증명서 폐지 관련 공증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2010. 4. 7. 및 2010. 7. 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에 사용되던 인감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공증인법에도 그 취지를 반영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공정증서 등의 원본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청구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 폐지를 골자로 마련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2010. 4. 7. 및 2010. 7. 26.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였다.

□ 다음 □

국민 민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신원 확인용 인감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사업 일환으로 대리인에 의하여 공정증서 등의 원본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 발급 청구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 그 증서 외에 청구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의 폐지를 골자로 입안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 ● 전자공증 관련 공증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2010. 5. 19.)

공증인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2010. 8. 7.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지정신청, 갖추어야 할 시설,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의 형식 및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법무부가 마련한 공증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2010. 5. 19.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 다음 □

8. 7.부터 도입되는 전자공증제도와 관련하여 지정공증인이 갖추어야 할 시설,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전자문서에 대한 면전인증시 촉탁인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및 지정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지정신청,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의 형식 및 인증절차 등을 골자로 귀부가 마련한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개정 공증인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현재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혹여 본격적인 시행과정에서 발현되는 개별 사안에 대하여 회원들의 개정의견이 접수될 때,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협회 의견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 법인의사록 인증 관련 공증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2010. 5. 19.)

법인의사록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결의 절차 및 내용 검사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의원입법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2010. 7. 26.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 다음 □

허위로 조작된 의사록 인증 촉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의견을 표시합니다.

#### ● 법인의사록 인증 업무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2010. 8. 18.)

부실한 법인의사록 인증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예방하고, 공증사무 감사에서 의사록 확인 법적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실하게 인증을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몇몇 공증사무소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는 점 등과 관련하여 법인의사록의 부실 인증을 근절하고, 인증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촉탁인의 구체적 확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 확인, 법령 위반 사항 여부 확인 등 구체적 업무처리방식을 골자로 법무부가 마련한 '법인의사록 인증 업무 처리지침(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2010. 8. 18.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 □ 다음 □

##### 1. 촉탁인의 확인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 「공증인의 법인의사록 인증업무 처리지침(안)(이하, '지침(안)'이라 칭함)」이 정하고 있는 "Ⅲ. 촉탁인의 확인" 부분에서 참석인증의 촉탁인의 표시부분 즉, "○ 촉탁인 - 참석인증 : 법인의사록의 작성주체인 의장(일반적으로 법인대표이사)(7페이지 하단에서 5번째 줄)"라는 부분은,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가, 이사회 의사

록의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이 모두 의사록의 작성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 의사록의 작성주체(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라고 하여 “……인 의장” 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침(안) “Ⅲ. 촉탁인의 확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주명부”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즉, ① “청문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 촉탁인이 제출하는 주주명부를 통하여 이를 확인”의 ‘주주명부(8페이지 하단에서 5번째 줄)’, ② “법인 의사록 인증시 공증인은 인증서 사본에 ……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의 ‘주주명부(9페이지 상단에서 3번째 줄)’, ③ “최근, 허위로 작성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경영권 변동 …… 공증인으로서 주주명부 등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를 특히 확인하여야 함”의 ‘주주명부(9페이지 상단에서 7번째 및 9번째 줄)’, ④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 제출된 정관 및 주주명부 등의 진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의 ‘주주명부(9페이지 상단에서 12번째 줄)’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주

주명부를 지칭한 반면,

○ ⑤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명부 등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의 ‘주주명부(9페이지 상단에서 11번째 줄)’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본점 소재지에 상법 제352조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비치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뜻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해당용어를 ①~④의 경우는 ‘주주명부(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로, ⑤의 경우는 ‘주주명부(상법 제352조에 의한)’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주주명부’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명부’만을 지칭하여야 하는데,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데 따른 것이므로, 앞으로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제39호 서식의 주주명부’는 명칭을 ‘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내역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2. 촉탁서 작성주체에 관하여

○ 지침(안) “Ⅲ. 촉탁인의 확인” 부분에서 촉탁서 작성방법 즉, “※ 촉탁서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 의해 작성되며, 촉탁

인의 다수인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 이하 생략(7페이지 하단에서 2번째 줄)”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촉탁서는 촉탁인뿐만 아니라 보조자도 함께 작성하는 것은 맞지만, 지침에 그와 같은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 촉탁인(또는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촉탁인란을 보조자가 대신 작성하여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실무상 혼선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바, “촉탁서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 의하여 작성되며,”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 대신 “촉탁서의 촉탁인란은 촉탁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위와 같은 취지에서 “공증인은 촉탁인과 보조자가 작성한 촉탁서의 촉탁인·대리인 확인란을 확인한 뒤 …… (8페이지 하단에서 4번째 줄)”라는 부분은 “공증인은 작성된 촉탁서의 촉탁인·대리인 확인란을 확인한 뒤 ……”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3. 의사록 제출 통수에 관하여

- 지침(안) “Ⅲ. 촉탁인의 확인” 부분에서 의사록 제출 통수 즉, “※ 촉탁인이 법인의사록을 촉탁하는 경우, 의사록 2통을 제출받을 것 …… 이하 생략(8페이지 상단에서 3번째 줄)”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실무상 의사록 3통을 제출받아 하나의 인증번호로 동일한 두 개

의 의사록을 인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잘못된 공증실무를 동 지침을 통하여 확실하게 바로 잡기 위하여는, 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점에 관한 항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 합니다. 그 위치는 일용 “Ⅵ. 서명날인 의사록의 보관” 다음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다 음 □

#### VII. 의사록의 제출 통수

- 법인의사록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의사록 2통을 제출 받아 인증을 마친 다음 그 중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철하여 보관할 것(공증인법 제66조의2 제4항, 제63조 제1항).
-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종종 의사록 3통을 제출받아 하나의 인증번호로 하여 그 중 2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적법한 공증방법이 아니므로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촉탁인이 회사보관용 외에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의사록 인증서가 1통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4통을 제출시켜 2건의 인증사건으로 처리하여 즉, 인증번호를 각기 부여하는 방법을 의하여야 함.



**4.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시 이의 소집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 지침(안) “V.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확인” 부분에서 소집권자의 확인 즉, “-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므로(상법 제362조),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함(11페이지 상단에서 2번째 줄 이하)”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지 다소 애매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사회 의사록을 따로 제출받는 경우에도 그 외에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정족수 이상의 이사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의 진술서와 기타 주주를 겸한 이사의 인감증명서의 제출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지침(안)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

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점은 따로 심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소규모의 주식회사는 주주와 이사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대체로 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도 제출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주주총회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확인되는 측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 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점은 따로 심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소규모의 주식회사는 주주와 이사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대체로 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도 제출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주주총회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확인되는 측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의 공증촉탁 관련 공증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2010. 11. 16.)**

공증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공증서에 시각장애인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점자·음성변환코드로 문서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한 후 첨부하도록 하고,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경우 참여인이 공증서를 낭독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나라당 주승용 의원이 의원입법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2010. 11. 16.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 다 음 □

1.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8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촉탁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입법취지는 현행 공증인법상 참여인제도나 공증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개정법률안에 따를 때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공증받을 길을 봉쇄당할 수 있으므로, 대한공증인협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 현행 공증인법상의 참여인에 관한 규정 및 공증절차에 관한 규정으로도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합니다.

원래 공증인법상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작성된 증서에 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이하 공증인법은 ‘법’으로 약칭함),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증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조하는 자 즉, 참여인을 반드시 참여시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29조 제1항). 여기서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에 작성된 증서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할 때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에게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 공증인은 작성된 증서를 반드시 ‘읽어주어’ 작성된 증서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실무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증인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있는바, 임명공증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히 임명됩니다(법 제



12조, 제13조). 인가공증인은 법무법인 중에서 특별히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법무법인입니다.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구성원변호사 중에서 임명공증인의 자격요건을 갖는 자만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의 4). 임명공증인이나 인가공증인은 5년마다 재임명받거나 재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5조, 법 제15조의 8). 공증인이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15조 제5항 법 제15조의 4 제4항). 또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공증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임명하지 않을 수 있고,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재임명할 수 없고(법 제15조 제2항) 공증담당변호사도 지정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5조의 4 제4항). 더구나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임명공증인은 물론 인가공증인도 법무부로부터 수시로 업무감독(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증인은 다른 대륙법계 공증제도와 마찬가지로 검사나 판사에 상응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그 자격과 신분이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아도, 시각장애인 등이 촉탁인인 경우에, 촉탁인의 보조자로서의 참여인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절차를 요

구하는 입법례는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증인의 자격과 신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공증인을 신뢰하고 일반적인 공증절차 외에 참여인의 참여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한 공증이 이루어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증인과 공증제도도 이들 나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공증인과 공증제도가 부실하여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공증을 촉탁한 사건에 관하여 '정확한' 공증을 받지 못하여 그들의 보호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불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더구나 개정법률안은 그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시각장애인 등이 공증을 받을 길을 봉쇄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촉탁인인 경우에 개정법률안과 같이 '점자'나 '음성변환코드'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면(개정법률안 제29조 제1항), 다른 공증사건 10~20건을 처리하여야 할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공증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공증인수수료규칙에 따른 수수료액만으로는, 가령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11,000원을 지급하는 정도의 수수료만으로는, 이와 같은 공증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바, 개정 법률안대로 개정된다면, 촉탁인이 별도의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쉽게 받을 수 없게 하고, 비싼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많 습니다.

#### 4. 또한 개정법률안은 공증인법의 기본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앞서 본 바와 현행 공증인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반드시 작성된 증서를 읽어주어 증서내용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문자를 모르는 자가 촉탁인이 되는 경우(개정법률안 제29조 제2항), 공증인이 참석자들로부터 증서내용에 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읽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도 족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여인이 직접 작성된 증서를 읽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증인은 작성된 증서를 읽어

주지 않고 열람하도록만 하고, 참여인이 읽어주어 작성된 증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촉탁인에게 증서에 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공증인보다 참여인이 더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모름지기 공증이란, 공증인이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절차에 참석하는 촉탁인이나 참여인 또는 기타 참석자 등 열석자는 공증인의 공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인이 공증절차에서 공증인보다 더 주도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여인을 공증인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증제도의 기본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유례가 없는 이상한 것입니다.

만일 개정법률안 제 29조 제2항과 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증인도 여전히 작성된 증서를 읽어주어야 한다면, 문자를 모르는 자가 촉탁인이 되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된 증서를 공증인이 한 번 읽어주고나서 다시 참여인이 또 한 번 읽어주어야 하는 것이 되어 매우 번거롭게 됩니다. 개정법률안이 과연 그러한 점까지 고려한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더구나 현행 공증인법상으로는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할 때 한쪽 당사자가 문자를 모르는 자인 경우에 상대방 촉탁인의 친족도 참여인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항을 바꾸어 살펴보겠습니다.

5. 공증인법상 참여인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공증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참여인결격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여인은 원래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촉탁인이 된 경우에, 그를 보조하는 자로서 공증인법상의 고유개념입니다(필요적 참여인). 그런데 종전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 제33조에서는 참여인의 결격자로서 촉탁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규정은 참여인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2인 이상이 함께 공증을 촉탁할 경우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대방 촉탁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한하여 참여인 결격자로 정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 자신의 배우자나 친족 등은 오히려 참여인으로 적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공증을 받으려고 할 때,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는 자구에

업매여 시각장애인 본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도 참여인결격자라고 취급하여, 참여인으로 참여시킬 자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를 대동하여야만 공증을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 등은 누구보다도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오히려 공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이를 개선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참여인결격자규정 즉 법 제33조 제3항 제5호를 개정하면서, 상대방 촉탁인의 친족 등은 여전히 참여인결격자로 두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하고 촉탁인의 친족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림으로써, 참여인 결격자로 남아 있어야 할 상대방 촉탁인의 친족 등도 참여인 결격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버리는 입법상의 과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장애가 없는 상대방과 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경우에 장애가 없는 상대방의 친족이 시각장애인 등의 참여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대방 촉탁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의 참여인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치명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상의 과오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6. 또한 개정법률안은 그 조문의 위치가 공증인법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실제 공증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일반적인 공증절차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필요적 참여인이 참여할 경우에 공증절차를 특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의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거나 제38조의 2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7. 결론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이 공증을 촉탁한 경우에 있어서 공증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증절차는 현행 공증인법상의 규정만으로도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할 뿐만아니라, 개정법률안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대한공증인협회는 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다만, 현행 공증인법 제38조의 규정상 시각장애인 등이 촉탁인이 된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내용에 대하여 열람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에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를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게 읽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는 의미에서 공증인법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본문

다음에, “단,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촉탁인이 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증서를 낭독하여 주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개정에 관하여는 저희 대한공증인협회의 입장에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공증인법 개정 당시 참여인 결격자 규정이 잘못 개정되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5호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을, “공증인 또는 촉탁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다만, 여기서 촉탁인은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대방 촉탁인에 한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공증업무 주요 질의 회신**

**○ 공정증서 보존기간 만료 관련(강남 제일합동)**

**▷ 질의내용**

1996. 11. 19.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13년이 지난 후 2010. 4. 5.에 와서 집행문 부여를 해달라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10년 넘은 공정증서 원본은 폐기되었으며,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13년이 지난 증서를 집행문 발급은 해야 하는지?

**▶ 회신(2010. 6. 15.)**

- 집행문은 공증인 등이 집행권원의 존재 및 그것이 강제집행에 적당하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인바, 집행력의 존재를 공증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체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도 권한도 없습니다.
- 한편, 소멸시효제도의 본질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그 이익을 소송에서 공격, 방어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익은 무시되는 것

으로, 시효기간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완성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는 소송에서 항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완성은 변제 등과 같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사유가 되어 집행증서의 경우 그 성립과정에서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표시된 청구권의 사후적 변동뿐만 아니라 그 성립에 있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청구에 내재된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집행문의 성질과 집행력의 본질, 소멸시효 제도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효기간 경과 사유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증인은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는 그 집행문 부여를 다룰 수 없지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함으로써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한편, 공정증서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감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

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 관련(법무법인 양현)**

▷ **질의내용**

약속어음을 공증할 때 입증자료로 징구하는 인감증명서 상의 사용용도란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 ① 사용용도란에 공증용 이외의 용도가 명시적으로 적힌 경우 공증이 가능한지 여부(예를 들어, 당사자들의 채권채무관계 차량리스용, 주식증자 등 이라 기재된 인감증명서)?
- ② 위 ①항의 경우를 공증하였을 때 공정증서의 효력?
- ③ 이후 집행문 부여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④ 아니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회신(2010. 6. 15.)**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감증명서의 본래 용도는 본인확인 수단이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일용 사용

용도가 상이하다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용도가 구체화된 인감증명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적 이의 제기 또는 공정증서 작성 이후 문제 발생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공증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까지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증실에서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한 후, 개별 판단하여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정증서상 주민등록번호 오기 관련(법무법인 청률)**

▷ **질의내용**

본 법인은 2002. 2. 4.자로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았다가 2007. 2. 16.자로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이 2005. 7. 12. 공정증서(증서 2005년 제○○○○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채무자 A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대보증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서로 바꾸어 기재된 것이 명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2007. 2. 16.자로 공증사무소 설치인가가 취소되면서 위 공정증서의 원본은 현재 다른 공증인사무소

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 ① 이러한 경우 위 공정증서상 오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작성자 법무법인 청률 또는 현재 원본을 보관 중인 사무실 중 어느 곳에서 정정을 받을 수 있는지?
- ② 정정에 따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③ 최초 공정증서의 작성자 법무법인 청률이 정정할 수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인지?

▶ **회신(2010. 9. 8.)**

- 이미 작성되어 교부된 증서에 관하여는 사후에 오기가 발견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행 “공증인법”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증서상의 당사자 표시에 오기가 있어도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에 따르면 오기가 있는 집행문 있는 정본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하여, 증서정본상의 당사자표시와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의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절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이나 집행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❶ **공증수수료 관련(일반 민원인)**

▷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인증할 경우에 수수료는 얼마인지요?

**합 의 서**

갑 : ○○○  
을 : □□□

갑과 을은 --- 관계로서 만의 하나 후일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한다.

- 1. 을이 갑의 ---- 와 원만한 결혼 관계를 유지할 시에는 본 공증은 효력이 없다.
- 2. 을의 고의 또는 실수로 위도, 음주, 도박 등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일을 하여 갑의 ---- 와 이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위 행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갑과 갑의 ---- 의 판단에 따른다.

- ① --- 병원을 매각하여 갑과 을이 공히 인지하고 있는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중 1순위로 갑의 투자금 십팔억원을 변제하고 2순위로 을의 투자금 삼억원을 변제하며 그 나머지 차액은 갑의 소유로 한다.
- ② 을의 재산중 1/2은 이혼 위자로 갑의 --- 에게 지급하여 을의 아들 --- 의 양육권은 --- 의 의견에 따르고 양육비는 이후 을의 매월 소득의 1/3을 --- 에게 지불한다.
- ③ 갑의 ---- 의 부정으로 이혼에 이를 경우에는 갑의 투자금 십팔억과 개인일로부터 12%를 가산한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면 병



원은 을이 소유할 수 있다. 갑은 부동산 상승 차액 및 누적 이익금은 포기한다.

④ 갑의 유고시 ①항의 구너리는 갑의 ---가 1순위이고, 갑의 ---가 2순위이며, 갑의 ---, 을의 아들을 3순위로 하여 균등 분할하며, --- 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가 ---의 소유부분을 관리한다.

⑤ 갑의 --- 유고시는 --- 명의 재산 전부를 갑이 소유하며 갑의 투자금 십팔억원은 을이 갑에게 반환한다, 갑의 유고시에는 4항에 따른다(병원 공동 명의 부분은 제외)

⑥ 을의 유고시는 을 명의 재산은 을의 ---와 을의 아들 ---에 귀속된다.

3. 을은 갑의 동의없이 --- 병원을 매도, 근저당, 임대, 보증, 담보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을은 병원 이익금에서 최우선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변제하며 갑의 동의 없이 운영이익금이나 병원의 자금을 을의 개인소유로 유용할 수 없다.

5. 갑과 을이 이견이 생길시에는 갑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6. 다른 사항으로 --- 병원을 양자 합의하에 정리한다면 --- 병원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7. 갑과 을은 지난 과오를 재론치 않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갑, 을 양자 및 온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

2010. 7. 28.

▶ 회신(2010. 9. 8.)

○ 첨부된 합의서에 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 경우 그 작성일자(2010. 7. 28.)에 비추어 볼 때, 2010. 2. 개정된 “공증인수수료규칙(법무부령 제693

호)”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합의서 상의 제2조 ①의 목적가액만으로도 금 21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현행 “공증인수수료규칙”상 인증수수료의 상한액인 금 50만원(동 규칙 제20조제1항)이며, 야간이나 휴일 등 할증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할증상한액인 금 75만원(동 규칙 제27조)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4회 공증주간 행사 개최



### ① 제4회 공증주간 기간

○ 2010. 9. 13.(월) ~ 2010. 9. 17.(금)

※ 공증인법 제정일(9. 23.)에 맞추어 시행하나, 추석연휴 관계로 앞당겨 실시

### ② 제4회 공증주간 행사 주최 및 후원

○ 주최 :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  
공동 주최

○ 후원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③ 제4회 공증주간 홍보대사 위촉

○ 홍보대사 : KBS 황수경 아나운서 /  
포스터 촬영 등 활동

### ④ 제4회 공증주간 행사 내용

#### (1) 공증강연회 개최

○ 일반 국민 뿐만 아닌 공증사무소 회원들을 상대로 공증의 종류와 수수료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하여 예방사법제도로서의 공증제도의 기능 홍보를 위하여 선포식 행사 직전에 ‘공증강연회’ 개최

△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10:00~10:50

△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 강 사 : 전병서 중앙대학교 법대교수

△ 주 제 : 새로운 공증제도의 소개 /  
강의식(질의·응답 포함)

#### (2) 선포식 개최

○ 공증주간의 홍보효과를 위하여 법조계 단체의 장 등이 참석하는 공증주간 선포식을 공증주간 첫 날에 개최

△ 일 시 : 2010. 9. 13.(월) 11:00~12:00

△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 ○ 주요 참석 대상

△ 송정호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 황희철 법무부차관

한명관 법무실장

△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조영제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홍보이사

△ 황수경 KBS 아나운서(공증 홍보대사)

#### ○ 선포식 동반 행사

△ 모범 공증인 3명 선발 법무부장관 표창장  
및 부상 시상 / 협회 추천

- 임명공증인 :

안산제일공증인합동사무소 박상진 공증인

- 인가공증인 :

- 공증인가법무법인(유한) 화우
- 공증담당변호사 : 공증인가법무법인 효원 대표 최종현 변호사
- △ 전직 협회장 등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장 감사패 및 선물(기명볼펜) 증정
- 이재성, 고재혁, 김교창, 조희종, 노승행 전 협회장

○ 선포식 족자 서명 이벤트

△ 이벤트 : 공증 홍보대사 겸 명예공증인 위촉식 및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공증서류 작성 서명 등 이벤트

※ 참고 : 공증주간 행사 모토인 “공증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족자에 참석 내빈이 각 서명을 하고, 명예공증인으로 위촉된 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국민에게 “본직의 면전에서 서약하였음을 인증합니다”라고 확인하는 서명날인의 인증 이벤트 진행

(3)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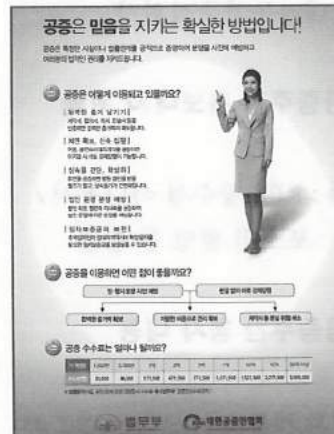
○ 포스터를 공증주간용 및 연중게시용 2종으로, 리플렛은 연중배포용 1종으로 제작하여 각 회원 및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 총 900곳 배포



<공증주간용>



<연중게시용 겸 리플렛>(앞면)



<리플렛-연중배포용>(뒷면)



(4) 기념품 제공

- 공증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데스크용 볼펜 550개를 제작하여, 각 회원사무소 및 선포식 등 참석자에게 제공

(5) 검찰청 현수막 게시 및 중구청·서초구청 관내 전자현수막 게시

- 길거리 대국민 공증주간 홍보효과를 위하여 전국 검찰청 60곳에 현수막 제작 게시



- 전자현수막(게시대)를 보유한 서울 중구청 및 서초구청 관내 총 7곳에 10일간 표출
  - 충무로2가 세종호텔사거리, 강남역, 방배역, 양재역, 교대역, 역삼역, 강남성모병원 앞 사거리 게시대

⑤ 제4회 공증주간 관련 대국민 언론 홍보 내용

(1) 일간지 및 언론사 공증주간 행사 관련 기사 게재

- 법률신문 9. 9.(목)자 5면 협회장 인터뷰 게재
- 법률신문 9. 16.(목)자 8면

“공증은 분쟁 대비한 최선의 자구책”

- 세계일보 9. 13.(월)자 50판 29면 “공증제도 홍보대사에 황수경씨 위촉”
- 내일신문 9. 13.(월)자 21면 “공증으로 법률분쟁 예방해요”
- 내일신문 9. 13.(월)자 23면 내일시론 “공증으로 공동체 갈등 줄이자”
- 중앙일보 9. 14.(화)자 35면 “송정호 전 장관 ‘공증주간’ 선포식”
- 인터넷 검색
  - BBS “법무부, 대한공증인협회 오는 17일까지 공증주간”
  - YTN “법무부, 제4회 공증주간 행사 개최”
  - KBS “법무부, 제4회 공증주간 선포식”
  - 중앙일보 “송정호 전 장관 ‘공증주간’ 선포식”
  - 매일경제 “법무부, ‘공증제도 활용하세요’”
  - 연합뉴스 법무부 보도자료 원문
  - 노컷뉴스 “공증인협회, 공증은 분쟁 예방하고 해결하는 수단”
  - 한국재경신문 “법무부, 제4회 공증주간 행사 개최”
  - 한국경제 “공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법무부·공증인협회 ‘공증주간’”
  - 포커스신문사 “계약서 등 실생활 거래땀 공증 통해 증거 남기세요”
  - 아주경제 “개인간 거래도 공증 활용하세요”
  - 동정코너 : 조선일보, 한국경제

(2) 방송 관련 홍보 내용

-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녁 (FM 101.0MHZ) 07:00~08:55
  - 9월 13일(월) 오전 8시 16분~28분 / 김진환 부협회장 전화 인터뷰

- KBS1TV 뉴스라인 23:00~23:30
  - 9월 13일(월) 23:20분 경부터 9번째 꼭지로 약 6분 34초 발송 / 김진환 부협회장 대담 인터뷰
-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00~10:55
  - 9월 16일(목) “이럴 때 필요하다. 생활 속 ‘공증’” / 안원모 총무이사, 김윤섭 검사, 전병서 중앙대 교수 출연

⑥ 선포식 행사 주요 인사 인사말

- 식사(式辭) -

송 정 호  
대한공증인협회장

존경하는 황희철 법무부차관님, 이상훈 법원행정처차장님과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님, 그리고 본 협회의 행사를 후원해 주신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윤여철 부회장님!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로 공증인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님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가 1주일간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공증주간”의 첫 날을 알리는 선포식 행사입니다.

“공증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드립니다”라는 기치로 올해 네 번째 펼치는 공증 주간은, 국민에게 법적권리 보호 사업의 초

석인 공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드리고, 공증의 생활화를 통한 선진적 법치문화의 증진을 가져오기 위한 뜻 깊은 행사입니다.

공증은, 국가가 부여해 주는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며,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쉽게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인증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공증인과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증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100여년에 불과하나, 세계적으로는 1천년 전 11세기 북이탈리아지방의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번창한 상업도시국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해양 강국으로 활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거래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문서로 작성해 주고 증명해 주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증인 제도가 생기고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물품거래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증여, 유언, 개인 또는 법인의 신분확인 등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행위들이 공증의 주요 대상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1천년 전부터 구라파에 신뢰사회가 형성된 것도 바로, 공증인을 국가가 임명 또는 인가하고,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국가가 인정해 주는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무형적 형태는 “약속”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바탕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서로를 믿지 못하면 사회적 불신이 팽배해져 법이 무시되는 무질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공증은 바로 이러한 약속을 공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신뢰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인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거래를 서류화 한다거나 나아가 공증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래 당시 조금은 불편하고, 상대방에게 섭섭함이 들더라도 공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계약서류에 증명을 받아 놓는다면 그만큼 당사자 쌍방으로 하여금 거래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손쉽게 권리구제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증인 여러분!

우리 공증인들도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공증인으로서의 책무를 중하게 인식하고 공증제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촉탁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고, 국민의 법의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법률후원자로서의 역할도 병행하여 공증이 우리나라 사법 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공증인과 업무보조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전

문지식과 역량을 배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증의 또 다른 이름은 “신뢰” 이며, 신뢰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공증은 그리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계단에 불과 합니다.

그 계단을 밟을 때 밝고 건강한 사회에 더 다가서는 것이고, 더불어 법치문화가 형성 될 것입니다.

공증의 활성화를 위해 KBS 황수경 아나운서께서 공증 홍보대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공증주간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이번 행사를 적극 후원하여 주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4회 공증주간 선포식을 맞아 공증업무 유공자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님의 표창을 받으신 회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공증제도와 협회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전임 협회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격려사(激勵辭) -

이 귀 남  
법무부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정호 대한공증인협회 회장님,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님,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님 등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네 번째「공증주간」의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사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으로 공증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해 오신 공증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증제도의 발전에 헌신해주신 공로로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대한공증인협회 역대 협회장님들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증인 여러분!

1913년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공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증제도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1961년 공증인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공증인의 수는 전국적으로 10여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공증사무소만 403개소에 이르고, 처리건수는 연 373만건, 가액도 51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올해 법정 의무가입 단체로 되었고, 10월에는 국제공증인협회

정식 회원으로 세계 76개 회원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모두 공증인 여러분이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업무에 임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증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지구촌의 경제 논의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증거를 남기는 계약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법률 분쟁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필요한 증거가 없거나 모자란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가려지지 못한 채 종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진 일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문화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문화를 정착시켜 소송남발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공증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를 조성해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는 법치주의의 기본이며, 갈등과 불공정을 해소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는 3년 전부터 공동으로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증주간 행사를 통해 공증이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지켜주는 제도로서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증인 여러분!

지난 2월 공증인의 자격 강화 등 선진 공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8월 7일에는 전자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제도도 시행되었습니다. 공증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법무부도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인으로서,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군 신뢰사회의 토양 위에서 공증제도가 꽃을 피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선진 법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공증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공증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축사(祝辭) -

박 일 환  
법원행정처장

존경하는 대한공증협회 송정호 회장님과 협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국의 공증인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법률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사법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온 대한공증협회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증주간'의 네 번째 선포식을 가지는 날입니다.

공증제도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온 공증주간 선포식에서 사법부를 대표하여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마련하시느라 애쓰신 대한공증협회 및 법무부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

공증제도는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이 조금 못 되는 역사 속에서 공증제도는 '법의 지배'를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생활 속의 법치를 실현하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공증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신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정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많고, 증거서류를 남기는 계약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곳에서는 그 어느 제도보다도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증제도



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기획된 공증주간이 그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벌써 네 번째 선포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대한공증협회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증인 여러분들의 신념과 노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

공증제도는 이제 또 다른 도약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실시된 전자공증제도의 시작으로 종이 없는 공증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제 공증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으며, 아울러 공증제도의 중심인 공증인 여러분들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 선포식이 이 땅에 공증제도를 굳건히 뿌리내리고, 법의 지배와 법률적 봉사의 확대라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표창의 영예를 누리시는 공증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공증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축사(祝辭) -

김 평 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존경하는 송정호 대한공증인협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

오늘 '제4회 공증주간 선포식'을 개최하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2005년~2006년 사이에 대한공증인협회 부협회장을 지낸 바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축하를 하는 것이 무척 기쁩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법률생활에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법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온 대한공증협회가 공증제도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증주간' 선포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증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 된지 9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공증제도는 국민들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고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전거래 등 각종 법률계약 분야에 공증제도가 활용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는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증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예컨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이에 대해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사후에 사랑하



는 가족 간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지 못해 사후 가족들 간에 법률분쟁이 잦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컨대 말기암의 경우 존엄사를 지시한다거나 또는 사후에 장기기증을 지시하는 등의 경우 그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소위 “존엄사 유언장(Living will)”이 꼭 필요한데도 아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점도 아쉽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거래가격 실가제가 도입된 이상 매매계약서는 공증문서로 되어야 법리상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 협의이혼 시의 이혼의사확인을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받도록 하면 법원의 업무부담도 덜고 국민도 많은 편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증의 활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증을 활용하면 국민으로서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는 비용과 절차를 통해 증거를 보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설사 분쟁이 발생한 후라 하더라도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속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적은 비용으로 미래에 발생하기 쉬운 분쟁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법률보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증제도를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증주간”을 마련하여 4년째 실행하고 있는 공증협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노고가 이 땅의 법치주의 실현에 커다란 기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공증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공증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2010. 1. 1. ~ 12. 31.)

- 2010. 1. 27. : 2010년도 정기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09년도 일반 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 승인 ②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 승인 ③ 임기만료 임원 및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 연장
- 2010. 2. 3. : 2010. 2. 7. 개정 공증인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제·개정 주요 골자 회원 안내
- 2010. 2. 5. : 공증서식 개정 관련 법무부 지침 회원 안내
- 2010. 2. 11. : 협회 정관 개정 전 제1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0년도 대한 공증협회지 원고료 산정 ② 공증인수 수수료율표(포스터) 제작 및 배포 논의 ③ 법무부에 대한 개정 공증 관계 법령 실무상 질의사항 검토 ④ 임시총회 개최일 검토 및 차기 임원 선출, 회규 제·개정 등 논의
- 2010. 3. 3. : 제2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 검토 ② 협회 조직변경 준비사항 논의
- 2010. 3. 9. : 개정 공증 관계 제법령 관련 법무부 업무지침 회원 안내
- 2010. 3. 17. : 법무부에 유언공증서류 보관기간 연장 등 건의
- 2010. 3. 22. : 제3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광고 행위) 진정서 검토 및 논의 ② 몽골공증인협회와의 교류 검토 논의 ③ 홍콩공증인협회 상임위원 방문 논의 ④ 일본공증인연합회 및 UINL 공동개최 아시아지역 공증협회 연합회의 초청 논의 ⑤ 회칙(안) 최종 검토 및 차기 임원·대의원 선임 검토
- 2010. 4. 5. : 협회 개정 전 정관에 따른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임시총회 개최 논의 ② 선출직 운영위원 전원 사임 결의
- 2010. 4. 7. : 법무부의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2010. 4. 26. : 제1차 임시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선출직 운영위원 전원 사임 승인 ② 정관 전문개정(협회 명칭 및 조직변경) ③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 및 새 회칙에 따른 임원, 운영위원 및 대의원 추천 전형위원회 구성 ④ 임원, 운영위원 및

대의원 추천 전형위원회 전형위원 선임 ⑤ 협회장, 부협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 선임 ⑥ 대의원 선출 보류 및 선임 협회장과 운영위원회에 선출권 위임 ⑦ 상임이사 및 이사 선임

▶선출 임원

협 회장 :

송 정 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부협회장 :

김 진 환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 수석부협회장

권 남 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로고스)

권 대 열 변호사 (법무법인 여산)

김 중 환 변호사 (대전종합 법무법인)

감 사 :

최 중 현 변호사 (법무법인 효원)

유 정 주 변호사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운영위원 :

임 갑 인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조 희 체 변호사 (공증인가 광주합동)

고 재 혁 변호사 (공증인가 세일합동)

이 재 성 변호사 (공증인가 동아합동)

박 승 서 변호사 (서초 법무법인)

정 재 현 변호사 (중부종합 법무법인)

노 승 행 변호사 (법무법인 두레)

상임이사 :

총무이사 안 원 모 변호사

(법무법인 한덕)

국제(섭외)이사 박 광 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교육(회원)이사 남 상 우 공증인

(안산제일공증인사무소)

법제이사 이 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무이사 이 봉 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 사 :

고 영 준 변호사 (제일종합 법무법인)

문 영 길 변호사 (법무법인 동일)

정 상 립 변호사 (법무법인 사명)

김 양 남 변호사 (공증인가 여의도합동)

이 용 복 변호사 (공증인가 한일합동)

백 수 일 변호사 (영남 법무법인)

강 수 립 변호사 (성심종합 법무법인)

한 기 찬 변호사 (법무법인 신촌)

현 영 두 공증인

이 상 완 공증인 (서울공증인합동)

김 태 우 변호사 (법무법인 국제)

김 영 곤 변호사 (법무법인 호남종합)

○ 2010. 5. 11. : 협회 개정 회칙에 따른 제 1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협회 운영방향에 대한 제반 문제 검토 ② 대의원 선출 방향 논의 ③ 각종 의결기구 회의 정례화 ④ 공증업무 질의 회신 검토 ⑤ 일본공증인협회 주관 제1차 아시아공증인포럼 참석 논의 ⑥ 국제공증인협회 요청 협회 “윤리강령 제정(안)” 논의 ⑦ 전자공증제도 관련 공증법령 제·개정(안) 논의

○ 2010. 5. 17. : 협회 명칭 및 정관(회칙) 변경 법무부 인가



- 2010. 5. 19. : 법무부의 전자공증 관련 공증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2010. 6. 7. : 협회 개정 회칙에 따른 제1차 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0년도 사업 계획 승인 ②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대의원 선출
- 2010. 6. 7. :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대의원 선출 ② 공증업무 질의 사항 검토 및 논의 ③ 일본공증인협회 주관 제1차 아시아공증인포럼 참석 논의 ④ 홍콩공증인협회 측의 아시아공증인협회(ANPA) 설립 참여 요청 논의
- 2010. 6. 15. : 공증업무 질의 회신
  - ▶ 강남제일합동(공정증서 보존기간 만료로 원본 폐기 후 집행문 발급 요청 관련)
  - ▶ 법무법인 양현(약속어음 공증시 인감 증명 사용용도란 기재 관련)
- 2010. 7. 5. : 협회 개정 회칙에 따른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장 선임 ② 보고사항 논의 ③ 이사 보궐 선출(법무법인 신촌 사퇴에 따른 법무법인 씨엘 보선) ④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 대의원 선출 ⑤ 공증인윤리강령(안) 검토
- 2010. 7. 5. :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 사항 검토 및 논의 ② 공증인윤리강령(안) 검토 ③ UINL 제26차 국제공증인대회 참석 관련 논의 ④ 제4회 공증주간 행사 관련 논의
- 2010. 7. 9. : 인천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
- 2010. 7. 18.~20. : 제1차 아시아공증인포럼 참석
- 2010. 7. 22. :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4회 공증주간 개최 및 행사 내용 논의 ② 공증인윤리강령 제정(안) 검토 ③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청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검토 ④ 법무부가 의견요청한 공증인의 법인의사록 인증업무 처리지침(안) 검토
- 2010. 7. 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20호) 및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56호)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2010. 7. 30. : 2011년도 연회비 및 과년도 미납 연회비 납부 회원 안내

○ 2010. 7. 30. : 총회 대의원 선임 통보

▶ 대의원 명단

서울중앙지검 소속 대의원 (28)

- 공증인 김성찬 사무소
- 공증인 장희목 사무소
-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 법률사무소
- 공증인가 경향합동 법률사무소
- 공증인가 동아합동 법률사무소
- 공증인가 세일합동 법률사무소
- 공증인가 소공합동 법률사무소
- 공증인가 신세계합동 법률사무소
- 공증인가 영동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경원

법무법인 광화문

법무법인 네모

법무법인 대중

동방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두레

법무법인 로투스

법무법인 봄

법무법인 새한양

법무법인 세창

법무법인 아시아

중부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태안

법무법인 하나

법무법인 한강

법무법인 한반도

법무법인 한별

홍익 법무법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대의원 (3)

공증인 신문식 사무소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법무법인 하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대의원 (4)

법무법인 강서

남부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다우

법무법인 안민

서울북부지검 소속 대의원 (2)

법무법인 북부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자유종합 법률사무소

서울서부지검 소속 대의원 (3)

공증인가 고려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위너스

법무법인 으뜸

의정부지검 소속 대의원 (3)

법무법인 다원

법무법인 정언

법무법인 통일

인천지검 소속 대의원 (5)

공증인가 주안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명인

법무법인 부일

법무법인 우리법률

법무법인 황해

수원지검 소속 대의원 (9)

공증인 김병남 사무소

경희 법무법인

법무법인 공평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누리

법무법인 대현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성남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진  
 평택 법무법인  
 춘천지검 소속 대의원 (1)  
 법무법인 울곡  
 청주지검 소속 대의원 (2)  
 공증인 정기호 사무소  
 법무법인 의림종합 법률사무소  
 대전지검 소속 대의원 (3)  
 공증인가 대전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전제일 법률사무소  
 서도 법무법인  
 대구지검 소속 대의원 (5)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팔공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가야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구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리나라로  
 부산지검 소속 대의원 (5)  
 공증인가 부민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구덕  
 법무법인 부산동부  
 법무법인 신성  
 법무법인 우리들  
 울산지검 소속 대의원 (2)  
 공증인 서보석 사무소  
 법무법인 원울  
 창원지검 소속 대의원 (3)  
 공증인 강처목 사무소  
 경남 법무법인  
 창원 법무법인  
 광주지검 소속 대의원 (4)

- 공증인가 광주제일합동 법률사무소
  - 공증인가 광주합동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법가
  - 법무법인 지산
  - 전주지검 소속 대의원 (2)
  - 공증인가 전주합동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백제종합 법률사무소
  - 제주지검 소속 대의원 (1)
  - 법무법인 해오름
- 2010. 8. 4. : 법무부에 개정 공증인법에 따른 협회 조직 변경 보고
- 2010. 8. 18. : 법무부의 공증인 법인의 사록 인증 업무 처리지침(안)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2010. 9. 6. :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4회 공증주간 개최 및 행사 내용 논의 ② 공증인 윤리강령 제정(안) 검토 ③ 공증업무 질의사항 논의 및 회신(안) 검토 ④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논의
- 2010. 9. 8. : 공증업무 질의 회신
- ▶ 법무법인 청률(공정증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오기한 경우 관련)
  - ▶ 일반인(인증 수수료 관련)
- 2010. 9. 8. : 프랑스 법률잡지사에서 한국 공증제도에 관한 인터뷰 실시



○ 2010. 9. 9. : 홍콩공증인협회 Kwong Chi Keung 상임위원이 협회를 내방, UINL 및 WON과 다른 아시아지역 공증인 단체(ANPA) 설립과 관련된 한국의 협조를 요청

○ 2010. 9. 8. :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 2010. 9. 13.~17. : 제4회 공증주간 시행

○ 2010. 9. 17. : 협회 윤리강령 제정(안) UINL 및 산하 CCNI에 송부

○ 2010. 10. 1.~8. : UINL 제26차 국제공증인대회 참석 / 모로코 마라케쉬

○ 2010. 10. 18. : 제2차 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공증인윤리강령(안) 제정 의결 논의

○ 2010. 10. 18. :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협회 기금특별회계 은행 예치 관련 논의 ② 공증부책 제작에 따른 공급단가 인상 및 제반 논의 ③ 2011년도 협회지 제호 변경 및 발간계획 논의 ④ 공증사무 처리 건의사항 처리 논의 ⑤ 제26차 국제공증인대회 참석 결과 보고 및 논의 ⑥ 제4회 공증주간 결과 보고 및 논의 ⑦ 공증업무 발전 방안 논의

○ 2010. 10. 22. : 2011년도 공증부책 공급단가 인상(권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및 일괄제작 공급에 따른 신청 회원 안내

○ 2010. 11. 8. :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윤리강령(안) 자구 정리 ②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③ 2011년도 협회지 표지 및 발간계획 논의 ④ 국제공증인협회 요청 이사회 이사 및 WNN 대행자 선정 논의 ⑤ 공증업무 발전 방안 논의

○ 2010. 11. 1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628호)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2010. 12. 3. : UNL 이사회 이사 및 WNN 대행자 명단 통보

○ 2010. 12. 22. :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원로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한 협회의 감사인사 방안 논의 ② 일본공증인연합회 측 CAAs 운영 관련 서한에 대한 협회 측 회신 방안 논의 ③ 2011년도 협회지 공증과신뢰 발간계획 논의 ④ 법무부와의 오찬간담회 주제 논의 ⑤ 2012년도 정년제 도입에 따른 공증인 가합동법률사무소 대량 인가취소 예정에 따른 공증서류 이관 보관 문제

검토

○ 2010. 12. 24. : 법무부와의 오찬간담회 진행

- ▶ 간담회 내용 : 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증업무 발전 도모 방안 제안 ② 협회의 재정 확충을 위한 회원 실적회비 도입 방안으로 공증부책의 조제 또는 인증권한을 협회장에게로 이관하는 방안 제안 ③ 2012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제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퇴임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해산 제반 문제 협조 제안 ④ 국제공증인협회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공증주간 행사 등의 경우 법무부 예산 지원 방안 협조 제안

**2010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2010. 1. 1. ~ 12. 31.)

○ 입회 현황 ○

◆ 법무법인 양재

- 인가일 : 2009. 12. 23.
- 대 표 : 최병모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2-14  
해동빌딩 6층 (137-863)
- 전 화 : 02-522-4264
- 팩 스 : 02-522-4265
- 입회일 : 2010. 1. 4.

◆ 법무법인(유한) 영진

- 인가일 : 2009. 12. 30.
- 대 표 : 정용인 · 김기수 · 김수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2층  
(135-911)
- 전 화 : 02-553-9300, 557-0042
- 팩 스 : 02-552-7986
- 입회일 : 2010. 1. 8.

◆ 법무법인 수

- 인가일 : 2009. 11. 20.
- 대 표 : 김현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7  
베르디타워 6층 (137-802)

- 전 화 : 02-3482-9252~6
- 팩 스 : 02-3482-9257, 591
- 입회일 : 2010. 1. 8.

❖ 공증인 유정주 사무소 - 소속 서울서부지검

- 인가일 : 2010. 1. 6.(임기 5년)
- 대 표 :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삼문빌딩 201호 (121-020)

- 전 화 : 02-701-6060
- 팩 스 : 02-416-1035
- 입회일 : 2010. 1. 12.

❖ 공증인 이진영 사무소 - 소속 서울서부지검

- 인가일 : 2010. 1. 6.(임기 5년)
- 대 표 :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삼문빌딩 201호 (121-020)

- 전 화 : 02-701-6000
- 팩 스 : 02-416-1035
- 입회일 : 2010. 1. 12.

❖ 법무법인 가온

- 인가일 : 2009. 12. 29
- 대 표 : 신환복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8  
행림빌딩 102호 (137-873)

- 전 화 : 02-3486-2400
- 팩 스 : 02-3486-5881
- 입회일 : 2010. 1. 12.

❖ 법무법인 인화

- 인가일 : 2010. 1. 8.
- 대 표 : 정춘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7층 (137-881)
- 전 화 : 02-534-8400, 591-1500
- 팩 스 : 02-597-2400
- 입회일 : 2010. 1. 13.

❖ 법무법인 광개토

- 인가일 : 2009. 12. 30.
- 대 표 : 주정대 · 최기엽 · 박기성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4  
동주빌딩 11층 (135-934)

- 전 화 : 02-596-7707
- 팩 스 : 02-508-8405
- 입회일 : 2010. 1. 13.

❖ 법무법인 디지털

- 인가일 : 2000. 8. 28.
- 대 표 : 장영하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3 태영빌딩 (461-801)

- 전 화 : 031-732-7700
- 팩 스 : 031-731-6457
- 입회일 : 2010. 1. 15.

❖ 법무법인 으뜸

- 인가일 : 2010. 1. 18.
- 대 표 : 이상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9



광신빌딩 301호 (120-834)

- 전 화 : 02-595-9898
- 팩 스 : 02-595-9563
- 입회일 : 2010. 1. 18.

◆ 대한 법무법인

- 인가일 : 2010. 1. 6.
- 대 표 : 한봉규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2-19  
태광빌딩 402호 (156-827)

- 전 화 : 02-3477-0955
- 팩 스 : 02-3477-0957
- 입회일 : 2010. 1. 19.

◆ 법무법인 신지평

- 인가일 : 2010. 1. 18.
- 대 표 : 박세환 · 김원일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의정부시 가농1동 365-3  
정옥빌딩 (480-101)

- 전 화 : 031-872-2255
- 팩 스 : 031-872-6677
- 입회일 : 2010. 1. 22.

◆ 법무법인(유한) 화우

- 인가일 : 2009. 12. 30.
- 대 표 : 변동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35-798)

- 전 화 : 02-6003-7000
- 팩 스 : 02-6003-7800
- 입회일 : 2010. 1. 28.

◆ 법무법인 해냄

- 인가일 : 2010. 2. 2.
- 대 표 : 유주상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1-15  
우창빌딩 4층 (135-870)

- 전 화 : 02-541-7232
- 팩 스 : 02-541-7238
- 입회일 : 2010. 2. 2.

◆ 법무법인 헤민

- 인가일 : 2009. 12. 5.
- 대 표 : 손성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4  
우성빌딩 1층, 3층 (137-874)

- 전 화 : 02-597-0170
- 팩 스 : 02-597-0174
- 입회일 : 2010. 2. 5.

◆ 공증인 김창엽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인가일 : 2010. 2. 5.(임기 5년)
- 대 표 :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동 85-3  
(100-814)

- 전 화 : 02-776-5709
- 팩 스 : 02-773-0121
- 입회일 : 2010. 2. 12.

◆ 법무법인 현대

- 인가일 : 2010. 2. 2.
- 대 표 : 황연택 · 성우경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30

신영빌딩 6층 (100-011)

- 전 화 : 02-775-7085
- 팩 스 : 02-775-7080
- 입회일 : 2010. 2. 19.

❖ 법무법인 지인

- 인가일 : 2010. 2. 4.
- 대 표 : 함성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도봉동 92-47  
청화빌딩 2층 (132-802)

- 전 화 : 02-972-3131
- 팩 스 : 02-972-4455
- 입회일 : 2010. 3. 2.

❖ 법무법인 길도

- 인가일 : 2010. 2. 5.
- 대 표 : 조동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4  
길도빌딩 401호 (137-885)

- 전 화 : 02-3476-3300
- 팩 스 : 02-3476-3113
- 입회일 : 2010. 3. 4.

❖ 법무법인 정진

- 인가일 : 2010. 2. 2.
- 대 표 : 김대영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10  
태평양금융빌딩 12층  
(135-931)

- 전 화 : 02-592-2224
- 팩 스 : 02-593-2224
- 입회일 : 2010. 3. 12.

❖ 공증인 신호양 사무소 - 소속 수원 지검

- 인가일 : 2010. 2. 26.(임기 5년)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석정동 24-4  
2층 (456-240)

- 전 화 : 031-672-6590
- 팩 스 : 031-672-6578
- 입회일 : 2010. 3. 31.

❖ 법무법인 수인

- 인가일 : 2010. 2. 2.
- 대 표 : 양승일 · 우관수 변호사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주현동 202  
상가 2층, 3층 (570-040)

- 전 화 : 063-837-0770, 837-3800
- 팩 스 : 063-837-0990
- 입회일 : 2010. 4. 7.

❖ 공증인 김영대 사무소 - 소속 대구 지검

- 인가일 : 2010. 3. 31.(임기 5년)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861-1 1층 (790-010)

- 전 화 : 054-246-9910
- 팩 스 : 054-244-4343
- 입회일 : 2010. 4. 16.

❖ 법무법인 양현

- 인가일 : 2009. 6. 1.
- 대 표 : 김의재 · 최경준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원서동 171  
원서빌딩 3층 (110-280)

- 전 화 : 02-593-7474
- 팩 스 : 02-595-1256
- 입회일 : 2010. 5. 3.

❖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 인가일 : 2007. 4. 18.
- 대 표 : 김주원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2  
에이스하이엔트타워 201호  
(152-740)

- 전 화 : 02-6220-6430
- 팩 스 : 02-6220-6113
- 입회일 : 2010. 5. 3.

❖ 법무법인 엘에스

- 인가일 : 2006. 2. 23.
- 대 표 : 염규상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김포시 사우동 248-1  
부흥빌딩 4층 (415-801)

- 전 화 : 031-996-0033
- 팩 스 : 033-985-0056
- 입회일 : 2010. 5. 3.

❖ 공증인 석진국 사무소 - 소속 창원 지점

- 인가일 : 2010. 8. 24.(임기 5년)
- 소재지 :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7-2  
성진빌딩 3층 (656-935)
- 전 화 : 055-637-7753
- 팩 스 : 055-637-7726
- 입회일 : 2010. 10. 19.

❖ 공증인 조병길 사무소 - 소속 수원 지점

- 인가일 : 2010. 10. 29.(임기 5년)
- 소재지 : 경기 광주시 송정동 337  
로얄프라자 110호 (464-903)

- 전 화 : 031-798-8811
- 팩 스 : 031-798-8816
- 입회일 : 2010. 11. 12.

❖ 공증인 문일호 사무소 - 소속 수원 지점

- 인가일 : 2010. 10. 29.(임기 5년)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4 금강플라자 505호  
(446-569)

- 전 화 : 031-805-7371
- 팩 스 : 031-8005-7372
- 입회일 : 2010. 11. 12.

○ 회원 탈퇴 ○  
(공증사무소 인가취소)

❖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 대 표 : 김익상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삼문빌딩 2~4층
- 탈퇴일 : 2010. 1. 6.

❖ 법무법인 명진

- 대 표 : 김석환 변호사



· 소재지 : 울산 남구 옥동 280-7  
 옥성빌딩 201호

· 탈퇴일 : 2010. 1. 15.

❖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이덕수 변호사

· 소재지 : 광주 동구 금남로1가 1  
 전일빌딩 2층

· 탈퇴일 : 2010. 1. 22.

❖ 신일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김문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17-11  
 흥국생명빌딩 제1별관 2층

· 탈퇴일 : 2010. 1. 22.

❖ 공증인 김주학 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동 85-3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빌딩  
 5층

· 탈퇴일 : 2010. 1. 27.

❖ 법무법인 마당

· 대 표 : 이재철 · 임한흠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1 평촌샤르망2 오피스  
 텔 304호

· 탈퇴일 : 2010. 2. 1.

❖ 공증인 심학무 사무소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99-23  
 미금농협도농지점 4층

· 탈퇴일 : 2010. 1. 22.

❖ 법무법인 율진

· 대 표 : 김기수 · 김경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1-71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201호

· 탈퇴일 : 2010. 2. 17.

❖ 새인천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윤영학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남구 주안6동 988-2  
 인성빌딩 2층

· 탈퇴일 : 2010. 2. 19.

❖ 법무법인 천지인

· 대 표 : 이상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4-8  
 우민빌딩 3층

· 탈퇴일 : 2010. 2. 22.

❖ 한남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김오섭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  
 석정빌딩 4층

· 탈퇴일 : 2010. 3. 9.

❖ 법무법인 신아

· 대 표 : 김우경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3  
 클리포드빌딩 2층, 3층

· 탈퇴일 : 2010. 4. 7.

❖ **법무법인 일월**

- 대 표: 김영대 변호사
-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861-1
- 탈퇴일: 2010. 4. 13.

❖ **공증인 정한중 사무소**

-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2층
- 탈퇴일: 2010. 6. 14.

❖ **대구제일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박돈식 변호사
- 소재지: 대구 중구 공평동 11-3 2층
- 탈퇴일: 2010. 6. 15.

❖ **법무법인(유한) 동인**

- 대 표: 정충수 변호사
-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5 삼성생명 서초빌딩 17층
- 탈퇴일: 2010. 7. 5.

❖ **법무법인 정암**

- 대 표: 부봉훈 변호사
-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1 한승아스트라Ⅱ빌딩 301호
- 탈퇴일: 2010. 9. 17.

❖ **서초 법무법인**

- 대 표: 박승서 변호사
-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3 서초빌딩 3층

- 탈퇴일: 2010. 9. 17.

❖ **한복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노승두 변호사
-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한진빌딩 본관 901호
- 탈퇴일: 2010. 9. 29.

❖ **국제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김창욱 변호사
- 소재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92-11 재능빌딩 1410호
- 탈퇴일: 2010. 10. 15.

❖ **한성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이정우 변호사
- 소재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3 리치타워 9층
- 탈퇴일: 2010. 12. 13.

❖ **법무법인 광개토**

- 대 표: 주정대 · 최기엽 · 박기성 변호사
-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4 동주빌딩 11층
- 탈퇴일: 2010. 12. 13.

❖ **현대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이세중 변호사
- 소재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60-1 광학빌딩 8층
- 탈퇴일: 2010. 12. 31.

◆ 동서울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주문기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503호
- 탈회일 : 2010. 12. 31.



## 공증과 신뢰 (2011 통권 제4호)

발행일 2011년 3월 28일  
발행인 송정호  
편집인 안원모  
발행처 대한공증인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8-1 변호사회관 403호, 404호  
전화 : (02)3477-5007  
팩스 : (02)3476-5551  
전자우편 : koreanotary@naver.com

제작 디자인 수  
전화 : (031)608-9981~2  
팩스 : (031)608-9980  
전자우편 : design-soo@hanmail.net

## Notary and Public Faith (Vol. 4 2011)

Published Mar 28, 2011  
Publisher SONG, Jeong-Ho  
Editor AHN, Won-Mo  
Published by Korean Notaries Association  
Address #403~404, 1718-1, Seocho3-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77-5007  
Fax. +82-2-3476-5551  
E-mail. koreanotary@naver.com